

국제인증 수유 상담사 시험기관(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정관

2017년 9월 15일 승인

제1조
이름과 위치

회사의 이름:

국제인증 수유 상담사 시험기관(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이하 "IBLCE®"). IBLCE의 본사는 때때로 이사회(Board of Directors, Board)가 의결할 수 있는 위치 또는 가상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제2조
목적

IBLCE는 인증 및 재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 및 유지를 통해 대중 및 수유 상담 분야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3조
제약

IBLCE는 비영리, 비과세, 자주적, 자발적 자격 인증 기관으로 설립된 버지니아 비주식회사입니다. 이사회는 순이익 중 어떤 부분도 이사회가 이사진, 임원 또는 기타 개인에게 이익이 되게 하거나 분배될 수 없으며, 이사회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지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4조
회원

IBLCE는 이사회가 운영하는 인증 기관이며 회원이 없습니다.

제5조
이사회

- 1. 일반적인 권한.** 이사회는 IBLCE의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방향을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본 정관 및 미국 버지니아 주법과 상충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IBLCE의 회의 및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해당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2. 집단.** 최소 9명 및 최대 15명의 선임 이사진으로 IBLCE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3. **구성.** 이사회는 적어도 한 명의 공공 구성원을 포함하고 인증 프로그램 인정 기준에 부합하여 선출된 이사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리, 문화, 언어, 수유 실습환경, 규율 및 이사회 필요와 관련된 전문 지식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회 대다수는 국제인증 수유 상담사 (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 이하 "IBCLC®") 인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사회 대다수는 모두 수유(breastfeeding)/수유(chestfeeding) 개인별 및/또는 부모별 지원 지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사진은 하나 이상의 범주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4. **기간.**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시차를 두고 3년 연속으로 10월 1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사진은 3년 재임을 위한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년 재임에 관심이 있는 이사회 이사는 일반적인 임명 절차를 통해 선출 대상이 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3년 임기 2번 연속 재임, 즉 6년을 초과하여 근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장(Chair)이 재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사회에서 탈퇴할 예정인 경우, 해당 개인은 추가 1년 동안 직전 의장으로 이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총 7년 동안 직무상의 비투표(ex officio non-voting)권을 가집니다.
5. **선출.** 이사진 직위에 대한 신청서는 구성을 원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자, 기관 및 단체에 광고될 것입니다. 이사회 정족수 대다수는 10월 1일 이전에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6. **공석.** 어떤 이유로든 이사회에서 발생하는 공석은 이사회 정족수 과반수 투표로 충원될 수 있습니다.
7. **이사의 면직 또는 사임.** 이사회 구성원은 전체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면직될 수 있습니다. 단, 면직사유 또는 사임신청서는 이사회가 최종 조치를 취하기 최소 30일 전에 면직 지명된 해당 이사에게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이사회가 면직 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이사는 상기 언급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사회 심의를 듣고 본 사안을 숙고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이사는 언제든지 이사회 또는 의장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은 통지서에서 추후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한 전달받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8. **자격 정지.** IBLCE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IBLCE로부터 보상을 받는 사람은 동시에 이사진으로 근무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6조

이사회 회의

1. **정기 회의.**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이사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2. **특별 회의.** 특별 회의는 의장 또는 2명의 이사회 이사의 소집 및 요청에 따라 열릴 수 있습니다. 집행 위원회는 이사회의 특별 회의의 장소와 시간을 정합니다.
3. **회의 참석.** 이사회 이사 중 일부 또는 전부는 회의 중 모든 이사가 서로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 참여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통지.** 각 정기 및 특별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서면 통지는 회의 개최일보다 10일 이전에 각각의 이사진에게 개별 발송되거나, 우편 발송, 팩스, 전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5. **정족수.**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서 현 이사진 중 절반 이상이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6. **투표.** 각 이사는 1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7. **회의에서 조치.** 이사회의 정족수가 출석하는 모든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 대다수 또는 집행 위원회의 행위는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의 행위가 됩니다. (단, 법률, 설립 정관, 또는 본 정관에서 더 많은 수를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8. **이사회 또는 집행 위원회의 회의가 없는 조치.**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조치는 모든 이사회 이사 또는 집행 위원이 만장일치로 서면 동의하여 회의 없이 취할 수 있습니다. 의장,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는 해당 서면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투표할 권한이 있는 이사회 이사 또는 집행위원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문서를 배포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 발효일은 동의서에 명확하게 다른 발효일을 명시하지 않는 한 마지막 이사회 이사 또는 집행위원회 구성원의 서면 동의를 받은 날로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서면 동의는 회의 투표 효과를 가지며, 어떤 문서에도 그 내용을 기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공식 회의록, 기록 또는 요약서에 비준되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7조

임원 및 집행위원회

IBLCE 임원은 이사회 이사와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사회의 공석을 채우고 설립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을 채택·개정·폐지하거나 합병 또는 해산 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회의 사이의 간격에 이사회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가집니다.

1. **구성.** IBLCE의 임원은 의장, 차기 의장, 직전 의장, 상임 이사, 이사회 이사 및 회계 담당자를 포함한 5명의 의결권 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임원은 한 번에 2개 이상의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직전 의장이 7년째 임기인 경우 이사회는 투표권이 없는 이사회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상임 이사가 선출됩니다.
2. **자격.** 이사회의 의장, 차기 의장, 직전 의장은 자격유지를 위해 IBCLC 인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근무 첫해에 임원 직위에 임후보할 수 있으며 첫 이사회 임기의 두 번째 해에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임원의 기간.** 각 임원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1년이며 1년 후인 9월 30일 만료됩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차기 의장은 다음 연도에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사회 이사는 임원으로서 한 직책에서 연속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여러 직책에서 5년 연속 근무할 수 없습니다.
4. **선출.** 임원은 10월 1일 이전에 이사회의 정족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됩니다.
5. **정족수.**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4명의 투표 임원이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6.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의장. 의장은 모든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와 최고 경영자 간의 주요 의사소통 연결 역할을 하며 본 정관이나 이사회 정책에 정의된 기타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 b. 차기 의장. 차기 의장은 의장이 부재한 경우 또는 의장의 행동 불능의 경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c. 직전 의장. 직전 의장은 필요나 요청에 의해 이사회와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문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 d. 상임 이사. 상임 이사는 이사회 정책에서 정의되고 주기적으로 개정 된대로 해당 임원의 역할에 요구되거나 요청되는 모든 책임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의 투표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e.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는 직원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연간 예산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재무 감독 간소화를 담당하는 재무위원회 의장이 됩니다.

7. **임원의 면직 또는 사임.** 모든 임원은 전체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면직될 수 있습니다. 단, 면직사유 또는 사유 진술서는 이사회가 최종 조치를 취하기 최소 30일 전에 면직 지명된 해당 임원에게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이사회가 면직 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임원은 위에 언급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사회 심의 청취 및 심의 사항을 고려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해당 임원은 언제든지 이사회 또는 의장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은 통지서에서 추후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한 전달받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공석.** 의장직에 일 년 중 공석이 있는 경우 차기 의장이 의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른 임원 직위가 공석인 경우 해당 임원 임기의 만료되지 않은 기간은 총 5인의 투표 집행위원회 구성원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 정족수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이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제8조 모든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

1. **상임위원회.** 본 정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 의장은 IBLCE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위원회 의장 및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 의장의 임원과 각 상임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1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3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위원회 공석은 이사회 의장이 충원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는 차기 의장, 의장 및 직전 의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상임위원회의 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소청심사위원회
 - b. 감사위원회
 - c. 인증위원회
 - d. 윤리 및 징계위원회
 - e. 심사위원회
 - f. 재정위원회
 - g. 진흥위원회
 - h. 연구위원회
 - i.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임명 절차와 매년 이사회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이사회가 승인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5명의 이사회 이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2. 태스크포스. 태스크포스는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의장과 구성원은 이사회 의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3. 권위. 모든 위원회와 태스크포스는 위원회가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의 없는 조치/통지/통지 권리 포기/정족수/이사회의 투표 요건. 본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의, 통지, 통지 권리 포기, 정족수 또는 이사회의 투표 요건 없이 조치를 담당하는 본 정관의 모든 조항은 모든 위원회, 태스크포스 및 그 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9조 운영

1. 최고 경영자(CEO).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CEO의 보상을 정하고 지불할 수 있으며 CEO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출장 및 여행 경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CEO는 IBLCE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이사회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 집행위원회, 모든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의 직무상의 비투표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CEO는 이사회가 정한 제약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정책을 시행하고 모든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관련 법률 또는 이사회가 정한 명시적 제한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CEO는 국제, 주,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에 모든 세금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집행하고 IBLCE의 명칭으로 그리고 IBLCE를 대신하여 모든 종류와 특성의 계약 및 기타 모든 법률문서의 효력을 발동시키고 전달할 권한을 갖습니다.

2. **회계 연도.** IBLCE의 회계 연도는 미합중국 및 버지니아 주의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선택됩니다.
3. **계약.**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는 임원 또는 법률 고문이 IBLCE의 이름으로나 IBLCE를 대신하여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문서의 효력을 발동시키고 전달할 권한을 서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권한은 일반적이거나 특정 사례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적어도 이사회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승인한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IBLCE를 대신하여 대출 계약을 하지 않으며 그 이름으로 부채 증거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권한은 일반적이거나 특정 사례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5. **선물.** 이사회는 IBLCE의 관리 문서에 명시된 대로 일반 또는 특정 법인 목적을 위해 IBLCE를 대신하여 기부금, 선물, 유산 또는 유증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6. **비과세 상태.** IBLCE는 미합중국 세법 및 버지니아 주 법률에 따라 비과세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7. **차별 금지.** IBLCE는 인종, 피부색, 종교, 종파,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성별, 민족성, 나이, 출신 국가, 혈통, 정치적인 신조, 능력/장애, 결혼 여부, 지리적 위치 또는 활동이나 운영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IBLCE는 IBLCE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뿐만 아니라 IBLCE 공동체에 들어오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포용적이고 따뜻하게 환영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10조 통지 권리 포기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본 정관의 조항이나 IBLCE 설립 정관 조항에 따라 이사회 이사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해당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서면상의 권리 포기는 그 통지에 기재된 시간의 전후와 관계없이 해당 통지를 제공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 독점 금지

관련 무역법의 독점 금지 및 제한을 모든 면에서 준수하는 것은 IBLCE의 정책이며 모든 IBLCE 임원, 이사회 이사, 위원회 구성원,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대행인의 책임입니다

제12조 면책

IBLCE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이사, 임원, 직원 및 업무와 과정 및 범위를 수행하는 대행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해당 면책에는 법정 비용과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제13조 개정

본 정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정 종류의 회의(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 필요한 통지 조항에 따라 모든 이사에게 통지가 제공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이사회 정족수의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투표를 하거나 해당 개정안에 따라 행동할 목적으로 요청된 회의에서 투표 또는 서면 투표로 본 정관은 개정되거나 폐지 될 수 있습니다.